

---

# 법률 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

강현철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위원

---

## 1.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

2000년 이후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령 문장의 용어와 표현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하고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5년까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한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단순한 법률 쓰기의 한글화보다는 내용과 문장 및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포괄 입법에 대한 입법 방법론상의 문제 제기 등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이하 ‘알법’이라 한다.)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5년간 총 982건의 법률과 1,200여 건의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한시법, 폐지 예정 법률 및 최근 제·개정된 법률 등 300여 건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할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011년 이후에는 하위 법령에 대하여 매년 400건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3,000여 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처의 ‘알법’ 사업은 그 추진 방식을 내용 알법과 순수 알법으로 나누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알법은 개별 법률의 내용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 법률을 개정할 때 모든 조문의 용어나 표현을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며, 순수 알법은 법률이나 정책 변경과 상관없이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할 목적만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추진 절차에 있어서도 내용 알법은 소관 부처가 개정 내용과 알법 정비에 관한 내용 모두의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만, 순수 알법은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하여 추진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이는 법률 정비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거의 모든 법률에 대해 한글화를 하였고, 알법 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변경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2. ‘알법’ 정비 기준의 주요 내용

알법은 쉬운 법령·뚜렷한 법령·반듯한 법령·자연스러운 법령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다. 즉 모든 법령 문장은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했다. 또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이 한눈에 보이는 표현으로 정비하고,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켰다.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였다.

법률 용어 정비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려운 한자어는 널리 쓰이는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순화(경료된→마친, 개피하다→개봉하다·뜯다, 잔여기간→남은 기간 등)하거나 쉬운 고유어로 순화(사위→속임수, 허위→거짓, 동법→같은 법, 통지→알리다, 해태→계을리하다 등)하였다. 하지만 고유어가 전문 용어의 의미 자체를 완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징수(徵收)하다, 고지(告知)하다, 양도(讓渡)하다 등)에는 예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였다.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가도→임시 도로, 당해→그·해당, 부의하다→회의에 부치다 등)로 순화하였으며, 지나친 축약어는 풀어 쓰도록(불요→불필요, 임면→임명과 해임 등) 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는 일상 언어 습관과 사용법(내지→~부터 ~까지, 아니한→않은, 아니하는→않는 등)에 맞게 고치도록 하였으며, 잘못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용어(년월일→연월일, 자문하다→자문에 응하다, 자문을 받다→자문하다, 불구자→지체 장애인, 인(人)→명, 기타→그 밖의·그 밖에 등)는 바로잡도록 하였다. 외국어는 우리말로 바꾸어 쓰도록 하거나 외래어 표기법(콘테이너→컨테이너, 화일→파일 등)에 맞게 쓰도록 하였다.

법률 문장 정비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문장 성분이 자연스럽게 호응하지 않는 경우

|   |  |
|---|--|
| 「향토 예비군 설치법」                              |  |
| 國防部長官은 豫備軍이 그 任務遂行을 위하여 出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 국방부장관은 임무 수행을 위해 <u>예비군이 출동할</u>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

② 한문이나 일본어 투 표현

|   |                       |
|---|-----------------------|
|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u>호환성 제고</u> 를 위하여 | ⇒ <u>호환성을 높이기</u> 위하여 |
|---|-----------------------|

|                                 |                               |
|---------------------------------|-------------------------------|
| 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u>변경이 있는</u> 경우에는 | ⇒ 주민등록번호와 국적이 <u>변경된</u> 경우에는 |
|---------------------------------|-------------------------------|

③ 중복되는 어색한 표현

|                      |                     |
|----------------------|---------------------|
| <u>~(이)라 함은</u>      | ⇒ <u>~(이)란</u>      |
| <u>○○법은 이를 폐지한다.</u> | ⇒ <u>○○법은 폐지한다.</u> |

④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복잡한 표현

|  |   |
|--|---|
| <b>「식품 위생법」</b>  |   |
| 第8條(有毒 器具 등의 販賣・사용 금지) 有毒・有害 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 容器・포장과 食品 또는 食品 添加物에 接觸되어 이에 有害한 영향을 줌으로써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 容器・포장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 또는 陳列하거나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유독 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器具) 및 용기(容器)・포장(包裝)은 팔거나 팔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거나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독(有毒)하거나 유해(有害)한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li> <li>2.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아서 이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li> </ol> |

⑤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                                   |   |                              |
|-----------------------------------|---|------------------------------|
| 참고인 <u>으로</u> 하여금 조정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 ⇒ | 참고인 <u>을</u> 조정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
|-----------------------------------|---|------------------------------|

|                               |   |                           |
|-------------------------------|---|---------------------------|
| 타인 <u>으로</u>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 ⇒ | 타인 <u>에게</u> 경영하게 할 수 있다. |
|-------------------------------|---|---------------------------|

그 밖에 법령문 띄어쓰기(제명과 명사/명사구, 접미사 등)와 문장 부호, 조문의 번호 체계 등의 정확한 쓰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 3. 성과와 전망

법령 용어와 문장은 국가 통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일제 강점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 중 하나다. 이러한 영향으로 용어와 문장이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져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해방 이후에는 일본의 법령과 제도를 답습하면서 서양식 법령 체계와 용어 등을 무분별하게 차용해 법령 용어와 문장은 일반 국민에게 더욱 어려운 것이 되었다. 해방 이후 정부와 학계 등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성과는 알려진 바와 같이 매우 미진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5년간의 알법 사업의 성과는 우리나라 법령 용어와 문장 정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특히, 법학 전문가와 실무계의 이견(異見)을 꾸준한 홍보와 설득으로 극복하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순화된 내용을 받아들여도록 한 것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법령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많은 한계가 있음을 조사 결과 알 수 있었다. 이는 전문 영역인 법학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어 학계와 법학계가 보다 많은 노력을 계속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100여 년간 전문 용어와 문장으로 자리 잡아 이미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야의 반발 등이 따를 수 있어 보다 쉬운 용어나 문장으로 정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예시한 정비 기준 역시 전문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시간과 교육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를 일반 언어 영역과 전문 언어 영역으로 이원화하여, 일반 언어는 좀 더 쉽게 순화하거나 정비하고 전문 언어는 새로운 언어적 대안을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